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개인신용정보 기록 미보존 시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7호)

2025.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13.

다. 회 부 일 : 2026. 1.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시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  
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현행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벌칙) ① ~ ③ (생략)                                     |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삭제>                       |
| 6. ~ 9. (생략)                                            | 6. ~ 9. (현행과 같음)           |
| 제52조(과태료) ① ~ ④ (생략)                                    | 제52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신설>                                                    | 5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 6. ~ 12. (생략)                                           | 6. ~ 12. (현행과 같음)          |
| ⑥·⑦ (생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sup>1)</sup>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날짜, 해당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sup>2)</sup>.

○ 위 조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업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향후 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50조제4항제5호<sup>3)</sup>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

---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가. 수집·이용한 날짜 나.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개정안은 이러한 신용정보 처리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 위반이 비교적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인데 비해 그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 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동 방안에는 개정안과 같이 「신용정보법」 상 업무처리 기록 보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24)에서도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재로 과태료 부과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개인 신용정보 자체가 아닌, 이를 수집·이용, 제공, 폐기 등 처리한 업무 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 위반이 개인신용정보 보호라는 행정 목적 달

성에 비교적 지장이 적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기존 형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06 |
|--------------|